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- 6호
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시행 공고(1차)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목적

○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

2. 지원 내용

□ 지원대상 및 금액

① (공통요건)

- (소상공인) 매출액^① 및 상시근로자 수^②가 소상공인에 해당
 - ① '19년 또는 '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 - ② '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'20.11.30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(1인 1사업체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-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 - 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

- ②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·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*·지자체**가 '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
 - * 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
 - *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- ③ (일반업종) '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'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
 - ('19년 이전 개업) '20년 연매출이 '19년 연매출 미만
 - ('20년 개업) '20.11.30.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 - 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- ※ '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'21.2.25일 마감) 후 **'20년 매출액이 '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**될 경우 **환수 대상**

<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>

구분		집합금지 업종	영업제한 업종	일반업종
지원 금액	영업피해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
	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	200만원	100만원	-
	소계	300만원	200만원	100만원

□ 지원 제외대상
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 - 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**무등록 사업자**
- '21.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*을 지원받은 경우
 -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

-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 - *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
- **휴·폐업** 소상공인* 및 매출액이 없는 **사실상 휴폐업** 소상공인
 - 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
- ※ 중복수급・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3. 지원방법 및 절차

- □ 1차 신속지급(1.11 ~)
 - 지원대상
 - 집합금지·영업제한

<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>

구 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	연말연시 특별방역
집합금지	유흥업소 5종(유흥주점· 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 포차·콜라텍), 홀덤펍	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 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 교습소, 홀덤펍	실외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·빙상장·눈 썰매장) 및 부대업체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 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권]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 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 학원·교습소	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 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 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 등	숙박시설

- 2 일반업종 :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
 - * '20년 부가가치세 신고('21.2.25. 마감)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
- 신청기간 : '21.1.11(월) ~
 - 원활한 신청을 위해 1.11(월)~1.12(화) 양일간 **사업자등록번호** 끝자리 기준으로 **홀짝제** 시행
 - * 1.11(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1.12(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
 - ** 1.13(수)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

- o 신청방법 :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
 - ^①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버팀목자금(또는 버팀목자금)"을 검색 또는 ^②주소창에 "버팀목자금.kr"을 입력

< 온라인 신청절차 > 대상조회 추가정보입력 지급 본인인증 ■휴대폰 인증 또는 ■ 정보제공 동의 ■ 신청결과 및 계좌 ■ 업체명 공동(공인)인증서 ■ 사업자등록번호 ■ 사업장 주소 입금사실 문자 통보 * 법인은 법인공동(공인) 입력 ■계좌번호 ■ 계좌입금 인증서만 가능 [참고: 1차 신속지급 추가] ○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,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'20년 1~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,25일 이후 지급 ○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'21.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□ 1차 확인지급('21.2월): 별도 공고('21.1월 중) *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,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□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('21.3월): 별도 공고('21.3월 중) * '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. 유의사항 □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 수급 ·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□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 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. 신청 문의 □ **전화 문의** :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(☎1522-3500 (평일 09~18시 운영)) □ **온라인 문의** : 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.kr) - 온라인 채팅상담

(평일 09~20시 운영)